

증권저축계좌 특약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: 2020. 4. 28

2. 개정 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(약관의 적용) ~ 제15조(양도금지 등) (생략)</p> <p>제16조(면책)</p> <p>① 이 예금의 압류 등 법적인 지급제한, 거래처의 사망, 파산선고, 기타 불가피한 상황 또는 예금주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·지급정지 및 은행의 업무상 불가피한 입금·지급정지 시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·지급정지도 정지되며,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·지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<u>대하여는 은행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② 천재지변, 전시, 사변, 은행의 감독 또는 관리 하에 있지 않은 문제, 전산시스템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,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연결 계좌와 관련된 거래의 지연 또는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<u>대하여는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제17조(수납가능 유가증권의 제한) 증권회사별 협약에 의해 수납 가능한 유가증권이 제한될 수 있다.</p>	<p>제1조(약관의 적용) ~ 제15조(양도금지 등) (좌동)</p> <p>제16조(면책)</p> <p>① 이 예금의 압류 등 법적인 지급제한, 거래처의 사망, 파산선고, 기타 불가피한 상황 또는 예금주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·지급정지 및 은행의 업무상 불가피한 입금·지급정지 시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·지급정지도 정지되며,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·지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<u>대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② 천재지변, 전시, 사변, 은행의 감독 또는 관리 하에 있지 않은 문제, 전산시스템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,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연결 계좌와 관련된 거래의 지연 또는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<u>대하여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17조(수납가능 유가증권의 제한) 증권회사별 협약에 의해 수납 가능한 유가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	<p>문구명확화</p> <p>문구명확화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